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재고찰

유 지 연*

아동의 온라인 활동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아동의 미성숙을 고려했을 때에 성인 보다 강력한 규제와 관리가 요구되는 대상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이 시행될 당시에도 법규정의 집행력과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더구나 최근에는 스마트폰, SNS 등의 ICT 발전으로 온라인 공간은 곧 아동의 삶 자체를 의미하고 있어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아동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파악하고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하여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규제내용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요구되는 정책적 대응 방향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는 아동 연령 기준, 개인정보 정의, 규제대상 범위, 동의획득 절차 등에 대해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목 차

- I. 서 론 / 36
- II. 아동과 개인정보 / 38
 - 1. 아동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특수성 / 38
 - 2. 아동 연령 기준 / 40
- III. 미국과 한국의 아동 개인정보 보호 규정 / 43
 - 1. 법률 개요 / 43
 - 2. 개인정보 정의 / 45
 - 3. 규제대상 범위 / 47
 - 4. 동의획득 절차 / 49
- IV. 결 론 / 51

I. 서 론

개인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자신을 확인시키거나 소통의 조건으로 활용되며 맞춤형 서비스 등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제공 또는 공개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통제 상태에 놓이지 않으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에게 재산적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래융합연구실 부연구위원, (02)570-4238, jyy@kisdi.re.kr

피해를 준다.¹⁾ 디지털사회가 진전할수록 다양한 온라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개인정보의 활용과 노출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성인 못지않게 아동도 적극적인 온라인 활동을 펼치며 자신에 관한 다양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개정을 통해 법정대리인 권리 규정을 두고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하지만, 법정대리인 권리 규정의 집행력과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법집행 대상의 차별화, 동의를 얻기 위한 방법과 절차의 명확화 등이 문제시 되었다.²⁾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 개인정보가 잘 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개인정보 침해나 해킹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문제가 확인되고 있는 실정이다.³⁾ 또한 최근에는 스마트폰, SNS 등의 ICT 발전으로 온라인 공간은 곧 아동의 삶 자체를 의미하고 있어 ICT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아동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파악하여 아동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적용되는 규제방법인 법정대리인 제도의 연령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오랫동안 신중하게 고려해 온 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면서 우리나라의 법규제 추진 상 요구되는

1) 이우석·전정기·이근창(2003), “미국의 온라인상 아동개인정보법에 관한 연구”,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2(1).
 2) 이인호(2001),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과 그 효율적 집행방안”, 《법과사회》 제20권.
 3) 방송통신위원회는 35만명의 홈페이지 회원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한국엠포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ZDNet》(2011. 11. 23), “개인정보 유출 한국엠포스, 과징금 3천 300만원”) 벅스 메이플스토리 해킹사건 처리과정에서 만 14세 미만 아동 20만명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수집한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에 과징금을 부과하였다(《ZDNet》(2012. 6. 14), “방통위, ‘넷스’ 과징금 7억... “개인정보보호 위반”).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셜커머스업체에 대한 관리 과정에서 만 14세 미만 아동 가입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였다(《리뷰조선》(2012. 4. 10), “소셜커머스 13곳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무더기 철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개정에서 핵심이 된 개인정보 정의, 규제대상 범위, 동의획득 절차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아동과 개인정보

본장에서는 아동을 별도의 보호대상으로 하는데 대한 필요성과 대상이 되는 아동의 연령기준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1. 아동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특수성: 안전한 온라인 환경 구현

(1) 상업적 활용과 위험한 접촉으로부터의 보호

아동은 분석능력과 판단이 부족하여 법률 및 정책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취약한 대상으로 처리되어 왔다.⁴⁾ 아동은 성인에 비하여 정보에 대한 진위판단·평가 능력이 미성숙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신중한 판단없이 무분별하게 처리한다. 아동은 인터넷을 놀이와 사회화의 장소로 보지만, 인터넷에서 많은 부분은 상업적 활동과 관련되며 아동에게 게임, 콘텐츠, 커뮤니케이션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을 유인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⁵⁾ 게시판, 설문조사, 이벤트 등을 통해 아동의 정보를 수집하고 다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아동이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⁶⁾ 하지만 아동은 일반적으로 온라인 콘텐츠와 광고를 구별하지 못하며 마케터들에게 노출된 개인정보 공개의 결과를 이해하지 못한다.⁷⁾ 그래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유통될 우려가 있으며, 아동의 숙려되지 않은 동의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4) FTC(1996. 12). "Staff Report: Public Workshop on Consumer Privacy on the 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5) Office of the Ombudsman(2009. 11. 19). "There Ought to be a Law: Protecting Children's Online Privacy in the 21st Century". *A Discussion paper for Canadians by the Working Group of Canadian Privacy Commissioners and Child and Youth Advocates.*

6) FTC(1996. 12).

7) Office of the Ombudsman(2009. 11. 19).

재산상의 불이익을 유발할 수 있다.⁸⁾

또한 이러한 기능이 잘못 활용되어 아동의 성적 착취에 활용되기도 한다. 아동의 노출된 개인정보를 통해 음란한 성적 콘텐츠, 사진, 비디오 등이 전송된다. 그리고 섹스팅 등이 추진되는 등 범죄에 이용된다.⁹⁾ 이러한 사회적 위험의 가능성은 성인에게도 해당되나, 아동은 정체성 형성기로 사회적 관계 장애, 성적 왜곡 등의 후유증으로 더욱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다.¹⁰⁾

이렇듯 아동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동안에 부적절한 내용, 공격적인 광고, 낯선 이와 위험한 접촉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으로 인해 아동들을 위한 “안전지대(safe zones)”를 만드는 노력이 있어 왔다.¹¹⁾ 즉, 온라인공간에서 유해한 광고와 콘텐츠 등 상업적 활용 및 성적 노출과 같은 위험한 접촉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광고 및 유해콘텐츠 차단 프로그램 등 기술적 제재, 자율규제, 소비자 및 기업 교육 등이 추진되었다. 그리고 여러 시도의 결과로, 미국에서는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을 제정하였다. 아동 대상 웹사이트 및 서비스업체의 정보 관행에 대해 부모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하며 자녀의 정보 수집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데 합의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부모 동의를 고려했다.¹²⁾¹³⁾ 즉, 온라인공간에서 아동에게 외부 위험으로부터의 안전막이 필요했으며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확보가 함께 고려되어야 했다.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은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도 아동의

8) 김명식·조용혁·현혜진·김선아(2006. 11), “위치정보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한국정보보호진흥원.

9) 최근 우리나라에서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13세 여자 아동을 유인하여 성폭행을 한 사건이 있었다(《데일리안》(2013. 7. 28). “카카오톡에서 만난 여자아이 성폭행한 20대 남성 6년형 선고”).

10) Office of the Ombudsman(2009. 11. 19).

11) Montgomery, K. C.(2000). “Children’s Media Culture in the New Millenium: Mapping the Digital Landscape”, *The Future of Children* 10(2).

12) FTC(1996. 12).

13)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은 아동 대상 웹사이트나 서비스업체가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쉽게 취득하고 그 정보를 임의로 거래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개인정보자기통제권이 이전되자, 아동의 개인정보자기통제권을 부모 관리 하에 두기 위하여 제안되었다(이우석 외(200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부여하여 온라인공간의 안전성을 판단하고 통제권을 통해 아동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2) 아동 온라인 삶의 심화

온라인 공간은 아동의 삶에 점점 더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이제 온라인 삶 속에서 아동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한다.¹⁴⁾ 더욱이 새로운 ICT 환경의 특성인 상호작용성·융합성·편재성은 아동에게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¹⁵⁾ 첫째, 새로운 ICT는 이전보다 좀 더 상호적이며 참여적인 양상을 띤다. 인터넷은 아동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사이트 상의 콘텐츠와 상호작용하고, 그들 고유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점점 더 많이 제공한다. 둘째, 새로운 ICT는 기존의 기술들을 새로운 방법으로 결합하며 확장한다. 텔레비전과 컴퓨터와 같이 이전에는 따로 떨어져있던 기술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ICT의 힘을 제공한다. 이러한 현상을 융합(convergence)이라 한다. 셋째, 새로운 ICT는 편재되어 있다. 즉, 아동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디지털 회로가 점점 작아지고 저렴해지고 많아짐에 따라 그리고 컴퓨터 네트워크가 점점 더 방대해짐에 따라서, ICT는 놀이방과 운동장을 포함하여 어느 곳에서든지 볼 수 있다.

이러한 아동 온라인 삶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아동 스스로의 삶에 대한 책임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2. 아동 연령 기준

아동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특수성 파악 과정에서 법정대리인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하였다. 그렇다면, 아동의 연령 기준은 몇 살이며 우리나라 법제도상 법정대리인 제도가 적용되는 만 14세 미만은 적절한 연령 기준인가? 연령 기준에

14) Office of the Ombudsman(2009. 11. 19).

15) Montgomery, K. C.(2000).

대한 합리성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은 사전적 의미로 ‘신체적·지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통일된 연령의 구분은 없다.¹⁶⁾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미국의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은 만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다. 초기 법률안 제안 당시에는 만 16세 미만이 언급되기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만 13세 미만으로 확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다.¹⁷⁾¹⁸⁾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으로 하고 있으며 이 연령으로 정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미국과 일본 및 우리나라의 형사미성년자 규정(형법 제9조)에서 당시 만 14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어 이를 적용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지만,¹⁹⁾ 정확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아동의 연령 기준에 대해서는 미국의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 개정 논의에서도 계속 이루어져 왔다. ‘가족 교육의 권리 및 프라이버시법(FERPA: Family Educational Right and Privacy Act of 1974)’에서 부모는 18세 이하 아동의

16) 법률 규정에서도 상황에 따라서 달리 적용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의1에서는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에서는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에서는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하며 민법 제4조(성년)에서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에서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증명서)에서는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7) Boyd, D., Hargittai, E., Schultz, J., and Palfrey, J.(2011). “Why parents help their children lie to Facebook about age: Unintended consequences of the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Firstmonday* 16(11).

18)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의 연령 기준은 개인정보가 상업적으로 활용되는데 대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확한 연령 설정이 어렵기 때문에 아동 성장을 고려해 임의적으로 분류되었다(Bartoli, E.(2009). “Children’s Data Protection vs. Marketing Companies. *International Review of Law*”, *Computers & Technology* 23(1-2).; Marwick, A. E., Diaz, D. M., and Palfrey, J.(2010). “Youth, Privacy, and Reputation”, *Harvard Law School Public Law & Legal Theory Working Paper Series Paper No.10-29*. 재인용).

19) 이우석 외(2003).

학교 기록에 대해서 해당 아동이 반대하여도 접근할 수 있고 아동에 의해 학교 기록이 공개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이는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에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 부모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과 정합성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다.²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과 상호작용 등의 온라인 활동은 오늘날 10대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불가결한 상황이므로 13세 이상의 10대도 개인정보 노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²¹⁾ 반면에 10대는 평판 관리 차원에서 개인 스스로의 정보를 잘 관리하고 있으며²²⁾ 아동의 온라인 활동 참여 증대와 아동 인터넷 산업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아동의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²³⁾

한편,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 필요성을 인지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캐나다에서는 연령 기준의 세분화를 제안하였다.²⁴⁾ 연령기준을 4단계로 나누어 13세 미만의 아동은 모든 개인정보에 대해서 수집·이용을 금지하며, 13세 이상 15세 미만의 아동은 부모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 제공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 공개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16세 이상 법적 성숙기(18세 혹은 19세)의 아동은 아동 자신의 사전동의(opt-in)와 함께 부모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공개를 허용한다. 성인은 스스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갖는 것으로 한다.

연령 기준에 대한 합리성 확보 시도는 우리나라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에도 나타나 있다. 위치정보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법정대리인 제도와 함께 의사무능력자인 8세 이하 아동(취학 전 영유아)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이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전행토록 하고 있다.²⁵⁾

20) Allen, A.(2001). “Minor Distractions: Children, Privacy and E-Commerce”, *38 HOUS. L. REV.*

21) Matecki, L. A.(2010). “Update: COPPA is Ineffective Legislation! Next Steps for Protecting Youth Privacy Rights in the Social Networking Era”, *5 Nw. J. L. & Soc. Pol’y.*

22) Marwick, A. E. et al(2010).

23) Boyd, D. et al(2011).

24) Office of the Ombudsman(2009. 11. 19).

25) 김명식 외(2006. 11).

이상에서 살펴본 바, 법정대리인 제도의 적용에 있어 논의가 되는 문제점은 아동의 온라인 삶에서의 안전성 확보와 판단력 사이의 격차 문제이다. 그리고 이 격차의 조정은 만 14세라는 단일 기준에 의해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아동의 판단력별로 연령 기준을 세분화할 것을 제안한다. 아동 판단력은 아동의 성장 단계에 따라 진전되는 것으로 보고, 아동의 성장 단계를 학습 정도에 따라 구분한다. 즉, 아동 판단력의 세분화 기준을 학습 단계에 따라 미취학 아동, 초등생 아동, 중학생 아동, 고등학생 이상 성인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이 연령 기준별 법정대리인 제도를 다음과 같이 달리 적용한다. 첫째, 만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의사무능력자로 보고 법정대리인이 아동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전행토록 한다. 그리고 법정대리인의 권리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동의만 가능토록 한다. 제3자 제공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 공개는 허용하지 않는다. 둘째, 만 6세 이상 만 1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제3자 제공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셋째, 만 12세 이상 만 15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정보 주체 아동의 동의에 의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 공개를 허용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은 이를 인지하도록 하며 법정대리인의 권리를 통해 사후거부(opt-out)가 가능하도록 한다. 그리고 만 15세 이상은 개인 스스로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확보토록 한다.

Ⅲ. 미국과 한국의 아동 개인정보 보호 규정

본장에서는 미국의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과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법규제 추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법률 개요

(1) 미국: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

미국은 1998년 10월 21일에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을 제정하였

다.²⁶⁾ 이 법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이하 ‘FTC’라 한다)가 아동의 개인정보가 온라인 상에 확산될 것을 우려해²⁷⁾ 1998년 6월 연방의회에 제출한 보고서²⁸⁾에 기반하여 제정한 것이다.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 규칙은 규칙 시행 후 5년 이내에 검토 규정을 두고 있다. FTC는 이 규정에 따라 시행 5년이 경과한 2005년 4월 21일 규칙 검토를 시작했다. 공개 의견을 모집한 결과, 2006년 3월에 FTC는 ‘개정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그 후, 아동의 모바일 기술 사용 증가 등 온라인 환경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FTC는 5년 후인 2010년 4월에 COPPA 규칙의 재검토를 결정했다. FTC는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는 등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2011년 9월에 COPPA 규칙 개정안(NPRM: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을 발표했다.²⁹⁾

COPPA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350개 이상의 코멘트가 있었으며 그 중에서 개인정보 및 아동의 웹사이트 또는 온라인 서비스 정의에 대한 것이 많았다. 그래서 FTC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고 그동안의 FTC 경험을 바탕으로 2012년 8월에 추가적인 개정안(SNPRM: Supplemental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을 제안하여³⁰⁾ 2013년 1월에 확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³¹⁾

26) FTC(1998).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of 1998”.

27) FTC는 1996년에 KidsCom이라는 웹사이트를 조사했다. 이 사이트는 아동들이 등록하면 게임을 무료로 할 수 있게 했다. 나이, 성별, 가족의 수,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좋아하는 TV 광고, 좋아하는 가수나 그룹, 취미, 인터넷 접속방법, 정확한 이메일 주소, 부모나 보호자의 이메일 주소, 우편주소, 인터넷 접속 속도, 장래희망 직업 등을 입력해야만 등록되도록 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월트디즈니사는 자사 제품 홍보와 마케팅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아동의 이름과 ID 등의 등록시 입력한 정보를 월트 디즈니사가 미리 선택한 회사와 공유했다. 아동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FTC는 1998년에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을 제정하기에 이른다(Wikipedia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28) FTC(1998. 10). “Privacy Online: A Report to Congress”.

29) FTC(2011. 9. 27).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Rule; Proposed rule—request for comment”.

30) FTC(2012. 8. 6).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Rule; Supplemental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request for comment”.

31) FTC(2013. 1. 17).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Rule; Final Rule”.

(2) 한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규정은 1999년 2월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現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마련되었다. 정보통신망 보급·활성에 따른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수집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에의 제공을 제한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오류 정정권을 부여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01년 1월에 이루어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로 개정하고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정대리인의 권리 규정을 마련하였다. 2005년에 제정된 위치정보법 및 2011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에 동일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2. 개인정보 정의

(1) 미국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온라인 상에서 수집된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individually identifiable information)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이름, 지역명과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사회보장번호, FTC가 정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상에서 특정 개인에게 연락가능한 기타 식별자,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와 웹사이트가 수집하거나 조합한 아동 또는 아동 보호자에 관한 정보이다.

이러한 개인정보 정의의 범위는 최근 개정을 통해 가명(screen names), 영구적 식별자(persistent identifier)로서 IP 주소, 사진·지리적 정보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개정 이전에 가명은 이메일주소를 나타내는 경우에만 적용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가명이 이메일주소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여러 사이트에 로그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특정 개인과 연계 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명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였다. 여기서 가명은 이메일 주소 등 온라인 연락처 정보와 동등한 수준의 기능을 가진 가명을 말한다. 가명이라 해도 내부운영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으로 FTC는 IP 주소에 보관된 고객정보를 포함한 영구적 식별자는 특정 개인과 연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IP 주소도 규칙의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판단과 관련하여 IP 주소가 특정 개인으로의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그러나 주소와 전화번호 등도 개인과 연결되지 않는 예외적 상황이 있을 수 있으며 개인으로의 연결성이 더 높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범주에 포함하였다.

사진에 대해서는 개정 이전에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것으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연락처를 아는 경우라면 적용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사진은 특성상 개인적 성격이 강하고 지리적 정보 등의 개인 연락처 정보를 포함하며 또한 얼굴인식기술을 통해 사진에 찍힌 인물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을 통해 조건없이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사진뿐만 아니라 비디오도 아동을 특정하거나 연결이 가능하므로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한국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라 함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인식별 가능성을 개인정보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와 동일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가명 및 쿠키 정보 등이 개인식별 가능한 범주에 포함되는지는 불확실하다.³²⁾

32) 개인정보보호지침에서 구체적으로 ① 살아있는 개인, ② 특정개인과의 관련성, ③ 정보의 임의성, ④ 식별가능성을 개인정보의 구성요소로 하고 해설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분명성이 존재한다(행정안전부(2011. 12),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가능한 한 명확히 함으로써 법률 적용 상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적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동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에 아동의 개인정보는 가명 등 추적가능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확대해야 하며, 개인정보 정의에 있어서 식별성과 결합성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보다 구체적인 설명 제시가 필요하다.

3. 규제대상 범위

(1) 미국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을 준수해야 할 의무 대상자는 아동을 대상으로 웹사이트 및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이며 웹사이트 사업자 및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로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을 인지하고 있는 자가 해당한다. 즉,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웹사이트 사업자라도 13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가 수집된다는 것에 대해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만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의 대상이 된다.³³⁾ 하지만,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모호하다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FTC는 다양한 연령층의 이용자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이트 가운데, 13세 미만의 이용자가 주요 방문객인 경우에만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 규제의 대상이 되는 웹사이트 및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로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의 적용 대상이 되는 웹사이트나 온라인 서비스는 ① 의도적으로 13세 미만의 아동을 사이트의 주요 방문자로 하고 있는 경우, ② 웹사이트나 온라인 서비스의 전체 내용에서 판단하여 13

33) FTC는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규칙을 준수하는 방법에 따르면, 웹사이트가 아동을 상대로 하는가를 결정할 때에는 몇가지 요인을 고려했다. 이러한 요인에는 주제, 시각적·음향적 콘텐츠, 사이트에 나오는 모델의 나이, 언어, 웹사이트의 광고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가, 대상자의 연령과 관련된 정보,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사용하는지 혹은 아동 지향적 특성이 들어있는지가 포함된다 (심슨가핀켈·진스파포드(노태영 역)(2002. 7. 18), “해킹사례로 풀어쓴 웹 보안”, 한빛미디어).

세 미만의 아동이 사이트의 주요 방문자가 되는 경우, ③ 웹사이트나 온라인 서비스의 전체 내용에서 판단하여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13세 미만 아동의 비율과 비교한 사이트 방문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아동이 많은 경우(단,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연령으로 선별한 경우는 아동 웹사이트나 온라인 서비스로 간주되지 않음)로 한정한다. ①과 ②와 같은 웹사이트나 온라인 서비스는 분명히 아동 웹사이트나 온라인 서비스이며 모든 이용자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 이용자 부모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 한편, ③에 해당하는 웹사이트나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 전체를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 상의 13세 미만 아동으로 취급하고 싶지 않은 운영자는 연령 확인 절차를 두는 등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최근 개정을 통해 FTC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툴을 자신의 사이트에 편입시킨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를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보고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 즉, 아동을 위한 웹사이트에서 광고 사업자 및 플러그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등 제3자를 편입시킨 웹사이트 사업자는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이 규정과 관련하여 FTC는 아동을 위한 웹사이트 사업자가 그 자신이 정보수집을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자신의 사이트가 아동을 위한 웹사이트라는 것을 인지가능하고 이용자 부모에게 통지하여 동의를 취득하는 조치를 취하기에 용이하며 광고 사업자 및 플러그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에게 사이트를 이용시킴으로써 어떤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³⁴⁾

(2) 한국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 대상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

34)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모바일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mobile privacy guideline)을 통해 ‘기술의 최소화(surprise minimization)’를 제시하고 앱의 기본 기능과 관련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고 그에 관한 관리 권한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2013. 1. 10). “California Attorney General Releases Mobile Privacy Recommendations”).

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포괄적 의무대상자 정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모두가 연령 확인 및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절차를 두도록 하여 사업자 부담만 가중시킬 뿐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통한 앱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앱 다운로드 시에 요구하는 약관에는 연락처, 통화기록, 휴대폰 기기정보, 내장 메모리 콘텐츠 등 해당 앱의 기능과 별 상관이 없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약관에 동의를 해야만 앱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앱 장터는 앱 판매를 통해 이익을 얻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³⁵⁾ 더욱이 앱 장터에서 인터넷 금기어인 음란 검색어를 입력하면 수천 개의 앱이 검색되는데 이용자의 연령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성인 인증을 거치는 앱은 10개 중에 1개 정도에 불과하며, 일례로 ‘정력 측정’이라는 앱은 이용 가능 연령이 4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³⁶⁾

아동의 개인정보 범위는 확대하되 규제 대상자는 아동 대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한정하고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광고 사업자 및 플러그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등 제3자를 편입시킨 웹사이트 사업자를 포함함으로써 아동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4. 동의획득 절차

(1) 미국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에서 웹사이트 사업자와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는 13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공개할 때 웹사이트에 공지를 해야 한다. 또한 법정대리인에게 직접적으로 통지해야 하며 검증 가능한 동의를

35) 《서울경제》(2013. 1. 13), “[이슈 인사이트] 개인정보 활용동의 일방적 요구… 사생활 유출 무방비 우려”.

36) 《중앙일보》(2012. 10. 17), “초등생도 보는 ‘19금 앱’ 얼굴 찍었더니…충격”.

취득해야 한다.

웹사이트 상의 공지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개정 이전의 규칙에서는 한명의 사업자가 연락 담당자로 지정되면 충분하다고 했었으나, 개정을 통해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모든 사업자의 연락처 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광고 네트워크, 모바일 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이용자의 부모가 어떤 사업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다. 둘째,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대한 설명을 합리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여기에는 최근 더 소형화하고 있는 휴대용 단말기 화면에서도 가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적시에 효과적인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① 사업자가 아동으로부터 얻은 부모의 온라인 연락처 정보 항목, ② 직접 통지의 목적, ③ 부모가 취해야 하는 또는 취할 수 있는 행동, ④ 수집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합리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2) 한국

정보통신망법에서 법정대리인의 권리 규정이 마련될 당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동의획득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았지만, 2011년 7월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활용 동의 절차가 개선되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제22조제1항),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제24조의2제1항), 취급위탁에 대한 동의(제25조제1항), 국외이전에 대한 동의(제63조제2항)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조치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가입과 이용에 제한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제24조의2제3항).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통해 동의획득방법을 제시하고 있다.³⁷⁾

37) 제12조(동의획득방법)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법 제26조의2에 따라 동의를 얻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이하 “동의 내용”이라 한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28>.

1. 인터넷 사이트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2. 동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이용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통하여 전달

그러나 법정대리인의 통제권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사려있는 동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동의획득 절차가 필요하다. 즉 통지방법 뿐만 아니라, 통지시기, 법정대리인의 충분한 확인절차 등에 대해서도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제공 행태별 선택적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소한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선택적인 아동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항목별 선별적 동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항목별 수집·이용에 대해 파악하기 쉽도록 도식화하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간편하게 사후거부(opt-out)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IV. 결 론

본고는 아동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파악하여 아동을 별도의 보호대상으로 두는데 대한 실효성과 연령 기준에 대한 합리성 확보 문제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최근에 법률 개정을 통해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입법례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요구되는 정책적 대응 과제를 모색하였다.

우리나라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는 ‘법정대리인의 권리’라는 법률조항만을 두고 간결하게 취급되고 있어서³⁸⁾ 아동과 부모에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부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미국에서는 아동의 개인정보자기통제권 확보 및 안전한 온라인 환경 구현과 아동 대상 정보서비스의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여러 이익과 가

-
- 하고 이용자가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3.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이용자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4.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 수집 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이용자에게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터넷주소·사업장 전화번호 등)을 안내하고 동의를 얻을 수 있다

38) 이인호(2001).

치를 엄정하게 고려해 세밀한 집행방법을 제시·개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고 충분한 집행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다음의 시사점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보호대상이 되는 아동 연령 기준의 구체화이다. 아동은 연령별로 판단력과 인지력에 차이를 나타낸다. 이에 아동 연령 기준을 세분화하여 연령 기준의 합리성과 법률 적용의 효과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개인정보 범위의 확대이다. 최근에는 빅데이터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 스마트폰 정보, 웹로그 정보, SNS 정보 등이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식별 정보로 전환 가능해짐에 따라서 이제 개인정보의 식별성과 결합성이라는 기준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범위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포괄적 의미로 재정의하고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체계화함으로써 상황에 따라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 및 보호 주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규제대상 범위의 명확화이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제대상의 범위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 연령 및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절차라는 부담감을 가중시키고 아동 대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규제대상을 아동 대상 업체로 한정하되 아동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자를 포함함으로써 아동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동의 획득 절차의 구체화이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는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법 집행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문제이다. 통지시기, 법정대리인 확인절차, 개인정보 항목별 선택적 서비스와 선별적 동의절차 등을 마련하고 이를 시각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동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상기의 시사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 내 법정대리인의 권리 규정에 한정짓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별법 제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명식·조용혁·현혜진·김선아 (2006. 11), “위치정보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심슨가핀켈·진스파포드(노태영 역) (2002. 7. 18), “해킹사례로 풀어쓴 웹 보안”, 한빛미디어.
- 이우석·전정기·이근창 (2003), “미국의 온라인상 아동개인정보법에 관한 연구”,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2(1).
- 이인호 (2001),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과 그 효율적 집행방안”, 《법과사회》 제20권.
- 행정안전부 (2011. 12),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 《테일리안》 (2013. 7. 28), “카카오톡에서 만난 여자아이 성폭행한 20대 남성 6년형 선고”.
- 《리뷰조선》 (2012. 4. 10), “소셜커머스 13곳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무더기 철폐”.
- 《서울경제》 (2013. 1. 13), “[이슈 인사이트] 개인정보 활용동의 일방적 요구… 사생활 유출 무방비 우려”.
- 《중앙일보》 (2012. 10. 17), “초등생도 보는 ‘19금 앱’ 얼굴 찍었더니…충격”.
- 《ZDNet》 (2011. 11. 23), “개인정보 유출 한국앱손, 과징금 3천 300만원”.
- _____ (2012. 6. 14), “방통위, ‘넥슨’ 과징금 7억… “개인정보보호 위반””.
- Allen, A. (2001). “Minor Distractions: Children, Privacy and E-Commerce”, 38 *HOUS. L. REV.*
- Bartoli, E. (2009). “Children’s Data Protection vs. Marketing Companies. International Review of Law”, *Computers & Technology* 23(1-2).
- Boyd, D., Hargittai, E., Schultz, J., and Palfrey, J. (2011). “Why parents help their children lie to Facebook about age: Unintended consequences of the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Firstmonday* 16(11).

- FTC (1996. 12). “Staff Report : Public Workshop on Consumer Privacy on the 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 ____ (1998).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of 1998”.
<http://www.ftc.gov/ogc/coppa1.htm>
- ____ (1998. 10). “Privacy Online: A Report to Congress”.
- ____ (2011. 9. 27).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Rule; Proposed rule–request for comment”. <http://ftc.gov/os/2011/09/110915coppa.pdf>
- ____ (2012. 8. 6).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Rule; Supplemental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request for comment”.
<http://ftc.gov/os/2012/08/120801copparule.pdf>
- ____ (2013. 1. 17).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Rule; Final Rule”.
<http://www.ftc.gov/os/fedreg/2013/01/130117coppa.pdf>
- Marwick, A. E., Diaz, D. M., and Palfrey, J. (2010). “Youth, Privacy, and Reputation”, *Harvard Law School Public Law & Legal Theory Working Paper Series Paper No.10–29*.
- Matecki, L. A. (2010). “Update: COPPA is Ineffective Legislation! Next Steps for Protecting Youth Privacy Rights in the Social Networking Era”, *5 Nw. J. L. & Soc. Pol’y*.
- Montgomery, K. C. (2000). “Children’s Media Culture in the New Millenium: Mapping the Digital Landscape”, *The Future of Children* 10(2).
- Office of the Ombudsman (2009. 11. 19). “There Ought to be a Law: Protecting Children’s Online Privacy in the 21st Century”. *A Discussion paper for Canadians by the Working Group of Canadian Privacy Commissioners and Child and Youth Advocates*.
-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2013. 1. 10). “California Attorney General Releases Mobile Privacy Recommendations”.